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651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1일

발 의 자 : 이정인, 정진술, 김인호,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홍성룡, 노승재, 김소영,
강동길, 봉양순, 김소양,
이병도, 오현정, 박순규,
이영실, 김제리, 김혜련
의원 (18명)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속한 학대 신고 및 사후 처리를 위하여 통일된 기관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별도의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9조의 제명).

나.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변경(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을“(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에는 센터장”을 “기관에는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장”을 “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센터는”을 각각 “기관은”으로 한다.

제9조의3 전단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4 전단 중 “센터”를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u>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를 설치·운영한다.</p> <p>② <u>센터에는 센터장과</u>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p> <p>③ <u>센터장은</u> 상근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u>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u>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9조의2(<u>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u>)</p> <p>① <u>센터는</u>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② <u>센터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p> | <p>제9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① ----- ----- ----- <u>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u>을 ----- -----.</p> <p>② <u>기관에는</u> 기관장----- -----.</p> <p>③ <u>기관장</u>-----.</p> <p>④ ----- <u>기관</u>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u>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u>) ① <u>기관은</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기관은</u> ----- ----- ----- -----.</p> |

수 있다.

1. 2. (생략)

③ 센터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 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제9조의3(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③ 기관은 -----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운영 위탁) ----- 기관-----

-----.

제9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기관-----

-----.